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19

발의연월일: 2020. 12. 14.

발 의 자:신동근·강훈식·김윤덕

김종민 • 박상혁 • 송영길

오영훈 • 유정주 • 이광재

이규민 · 장경태 · 진성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 및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정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훈련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 재활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에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 보호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으 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	2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	
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